

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4. 11.(월) 14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○ 제9차, 제10차, 제1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 확인

○ 제18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○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㉚ 의결사항

가.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(2016-19-062~087)

-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,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위반한 26개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위한 시정조치(안)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,
 - 같은 법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한 (주)위드웹 등 2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고,
 - 같은 법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을 위반한 (주)위드웹에 1,500만원, (주)캔들미디어, (주)벤타코리아에 각 1,000만원, (주)엠포, (주)아이티앤스토리, 청개구리투자클럽(주) 등 3개 사업자에 각 700만원, (주)와우포스트, (주)포스트미디어, (주)이한케스트 등 3개사업자에 각 1,000만원, (주)티오피홀딩스, 와이제이정보(주), (주)모든국민은주주다 등 3개 사업자에 각 500만원, (주)MD파트너쉽, (주)엔씨에스, 문자사항 등 3개 사업자에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 - 같은 법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한 (주)와우소프트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㉛ 보고사항

가. 「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현재의 시정조치명령,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경우 감경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정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준수 교육, 편람 제작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 요소 및 실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「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」 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, 원안대로 접수함

나. 「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이용자 본인이 과거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, 사업자의 접근배제 여부 판단·결정, 결과 통보 및 제3자의 이의신청 내용을 담은 「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」 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,

-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상임위원의 의견과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·보완하여 재논하기로 하고 안건 접수를 보류함

다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 방송법 개정(1.27 공포, 7.28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 및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 가상·간접광고 규정 정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,
-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 받는 상품 등은 간접·가상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할 당시 입법 취지와 방송법과 개별법과의 정합성 등 검토를 하기로 하고,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6. 폐 회 (17:10)